

#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3월 4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3월 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상정

○ 제14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3. 17) 원안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예술과장 심 명 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9조제2항 → 제34조 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  
(안 제3조제1항)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

| 질의 내용                    | 답변 내용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input type="radio"/> 없음 | <input type="radio"/> 없음 |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없음

나. 반대토론

없음

### 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

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음

#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 | 제221호                  |
| 의결<br>년월일 | 2008. 3. 20<br>(제142회) |

제출년월일 : 2008. 3. 4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29조제2항 → 제34조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(안 제3조제1항)

##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2001년도”를 “2001년”으로 하며, “연도별”을 “연도별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단”을 “다만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”를 “기금운용 계획에 따라”로 하고, “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6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며, “범위내”를 “범위 안”으로 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개시전”을 “개시 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년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중 “대상사업등”을 “대상사업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사진등”을 “사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다음 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예술업무담당주사”를 “문화예술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회계년도마다”를 “회계연도마다”로 하고, “출납폐쇄후 2월이내”를 “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세입세출외”를 “세입·세출 외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천시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기타 잡수입</p> <p>③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1999년까지 출연한 출연금 이외에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2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출연하고, 연 출연금은 연도별 균등하게 출연한다. 단, 연출연액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(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)로 관리한다.</p> <p>②기금은 「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위탁한다.</p> | 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문화예술발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다음 각 호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그 밖의-----</p> <p>③ -----</p> <p>-----</p> <p>2001년-----</p> <p>-----연</p> <p>도별로-----다만, --</p> <p>-----.</p> 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-----</p> <p>기금운용 계획에 따라-----</p> <p>-----제34조제</p> <p>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</p> <p>-----.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제6조에</p> <p>따라-----</p> <p>-----.</p> |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③ (생략)</p> <p>④기금은 <u>당해년도</u>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,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매년 이자 수익금 일부를 재적립할 수 있다.</p> <p>제4조(심의)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<u>다음 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</p> 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년도 <u>개시 전</u>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</p> <p>②<u>제1항의</u>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<u>다음 각호</u>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당해년도</u> 기금사용 계획</p> <p>3. 4. (생략)</p> <p>제6조(기금지급 대상사업등) ①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<u>다음 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문학, 미술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, 어문, 국악, 건축, <u>사진등</u>의 문화예술활동</p> |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del>-----</del><u>해당 연도</u><del>-----</del><br/><u>범위 안</u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.</p> <p>제4조(심의) 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u>다음 각 호</u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<del>-----</del></p> <p>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 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u>개시 전</u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.</p> <p>② <u>제1항에</u> 따른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u>다음 각 호</u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해당 연도</u><del>-----</del>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기금지급 대상사업 등) ① 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u>다음 각 호</u>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br/>1. <del>-----</del><br/><del>-----</del><br/><u>사진 등</u><del>-----</del>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>2.~4. (생략)</p> <p>5. <u>기타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를 거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|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그 밖에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u>. &lt;삭제&gt;</u></p> |
|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</u>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기금출납원 : <u>예술업무담당주사</u></p> <p>② (생략)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<br/>-----<u>다음 각 호</u>-----<br/>-----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: <u>문화예술업무담당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8조(결산 및 보고) ①기금운용관은 <u>회계연도마다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2월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  | <p>제8조(결산 및 보고) ① -----<br/>--<u>회계연도마다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u>출납폐쇄 후 2개월 이내</u>-----<br/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           |
| <p>제9조(관계규정 준용)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「부천시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<u>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 | <p>제9조(관계규정 준용) -----<br/>-----<br/>-----<u>세입·세출외</u>-----<br/>-----</p>  |
| <p>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 | <p>제10조(시행규칙) -----<u>시행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 |